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7월 19일,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2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1.23.)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3.20.)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5.4.2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6.23.)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원택 의원)

한우는 오랜 기간 한국 고유의 유전적 특성을 유지해온 중요한 가축 유전자원이자 국민의 주요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우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하지만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 호주, 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자급률 저하 및 농가호수 급감 등으로 생산기반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2026년 관세화 제로 이후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더하여 축산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탄소중립에 이바지하고 한우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한우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한우농가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한우농가의 탄소저감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의무화하려는 것으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임.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현재 「축산법」에서 축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우산업에 대해서만 별도의 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행 「축산법」에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증대 및 축산물 수급 안정화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새로운 제도 도입이 필요할 경우, 현행 「축산법」을 개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의견임.

반면, 현행 법령 체계로는 제정안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각종 지원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서는 제정안과 같이 관련 정책을 구체화·의무화 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한우협회 등의 제정안 찬성 의견도 존재함.

또한, 이와 관련하여 양봉·말·곤충·양잠 등에 관한 개별법¹⁾도 존재하므로, 품목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개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음.²⁾

둘째,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한우산업만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축산 분야 가운데 한우산업에 대해서만 특별지원을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고, 다른 축종 분야에서도 법 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³⁾

반면, FTA로 인한 시장개방 이후 한우산업의 피해가 비교적 높았으며, 주요 소고기 수입국가에 대한 관세 철폐가 예정⁴⁾되어 있음.

따라서, 한우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한우산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부 품목의 경우 산업육성 차원에서 별도 법령을 제정하여 운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주요 농축산물과 비교 시 생산방식과 산물의 유통 및 가격결정 체계가 특수(낙농·양봉 등)하고, 낮은 생산소비 저변으로 산업 활성화가 시급한 특이 품목(차화훼·곤충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의견 제시

3) 실제로, 제21대국회에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문표의원안),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원택의원안)이 발의되었으나 별도의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폐기된 바 있음.

4) 2026년부터 미국산 소고기, 2028년부터 호주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따라서, 제정안의 입법 여부에 대해서는 한우산업에 대한 정책지원 필요성, 현행 제도 및 「축산법」 등 여타 법률과의 관계, 다른 축종과의 형평성, 국민적·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